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
공 고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예규(재민 2004-7) 제8조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합니다.

- 공고할 사항 -

1. 화해허가신청 고지서 (덧붙임)

2017. 1. 13.

재판장 판사 이은희

화해허가신청 고지서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604 증권관련집단소송

원고(대표당사자) : 주식회사 큐에스아이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8길 17

대표이사 이청대

피 고 : 로얄 बैं크 오브 캐나다(Royal Bank of Canada)

캐나다 온타리오 토론토 베이 스트리트 200

(200 Bay Street, Toronto, Ontario, Canada)

대표자 사장 고든 엠 닉슨(Gordon M. Nixon)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604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에 관하여 원고(대표당사자, 이하 '원고'라 합니다)와 피고로부터 재판상 화해허가신청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고지합니다. 구성원은 서면으로 화해허가신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24조 제2항).

1. 총원의 범위

한화증권 주식회사가 2008. 4. 25.경 발행한 '한화스마트 주가연계증권(ELS) 제10호 (원금비보장형)'를 매수하였다가 만기에 상환받은 자.

2. 화해의 이유

총원은 주장하는 손해를 온전하고 신속하게 보전받고, 피고는 대외신인도를 고려한 불안정 요인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하여 화해에 이르게 되었다고 원고와 피고는 밝히고 있습니다.

3. 원고측에 지급될 총 금액 및 지급방법(화해의 내용)

가. 지급총액

피고가 총원에게 지급할 화해금액의 총액은 1,867,729,941원으로 합니다.

나. 화해금의 산정

1) 제외신고자 등의 처리

이 사건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소송허가 단계에서 '한화스마트 주가연계증권(ESL) 제10호(원금비보장형)'를 만기까지 보유한 총원은 412명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 사건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된 날(2016. 3. 18.)로부터 60일(2016. 5. 27.)로 지정된 제외신고 기간 동안, 위 412명의 구성원 중 4명이 제외신고를 하였습니다.

한편 구성원 중 142명은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별도의 공동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16. 11. 30.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12명의 구성원 중 제외신고자 및 법원 조정이 성립한 자들을 제외한 총 266명 구성원이 입은 손해액에 관하여 화해금을 지급합니다.

2) 손해액의 산정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은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이 만기 수익금지급조건을 충족시키게 될 경우 상환받았을 금액(투자원금의 122%)과 실제로 상환 받은 금액(투자원금의 약 74.6%)과의 차액이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위 266명의 구성원들에 대한 합계 금액은 1,697,936,310원입니다.

3) 화해금의 산정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화해금은 위 266명의 구성원들에 대한 위 합계금액 1,697,936,310원의 110%에 해당하는 1,867,729,941원입니다.

다. 소송비용 및 분배비용

피고는 위 가.항 지급총액과는 별도로 원고에게 소송비용 및 분배비용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라. 지급방법, 지급기일 및 지연손해금

화해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법원의 화해허가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원고가 정하는 지정계좌에 입금합니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지급액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4. 변호사 보수

착수금은 0원으로 하고, 성공보수는 판결, 화해, 조정성립 등으로 인정되는 추가 만

기상환금 또는 손해배상금(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포함) 중 1심에서 성공시 15%(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동일), 2심에서 성공시 20%, 3심에서 성공시 24%로 약정되었으나,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

5. 분배의 기준 및 방법 등

가. 각 구성원에 대한 지급금액은 피고가 지급한 화해금에서 변호사보수를 공제한 금액에 원고가 주장하는 전체 손해액에서 해당 구성원의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다만 변호사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소송비용과 분배비용은 화해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지급한 소송비용 및 분배비용 30,000,000원에서 지급하기로 하되, 만약 그 금액이 3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고 소송대리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만약 이에 미치지 못하여 잔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55조의 잔여금과 같이 처리하기로 합니다.

6. 화해허가 여부 결정을 위한 심문의 일시 및 장소

2017. 2. 9. 14:30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7호 법정

7.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주소·연락처 및 문의 방법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주영, 송성현, 구현주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27, 431호(서초동, G-Five Central Plaza)

(전화번호 : 02-537-9500, 팩스번호 : 02-564-9889)

2016.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 재판장 판사 이은희